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837
----------	-------

발의연월일 : 2026. 7. 8.

발 의 자 : 강선영·이달희·강대식
서명옥·김 건·유용원
최수진·김용태·구자근
임종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전에서 화약류 세척과정 중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번 사고는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화약류 세척 과정에서 안전 관리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냈음.

이에 화약류 세척 행위를 별도의 신고·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조소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세척 역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화약류 세척에 대한 기술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세척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화약류의 세척) ① 화약류를 세척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척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의 제거를 위한 세척을 그 제조소 안에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찰서장은 화약류 세척의 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 등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약류 세척의 중지를 명하거나 보완하여 세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화약류의 세척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의2제3항에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 자

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7조제2항”을 “제20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0조제4항 또는”을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신설>

3. 4. (생략)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5항, 제11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35조제1항(총포는 제외한다) 또는 제66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생략)

3. 제20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 6. (생략)

② (생략)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0조의2제3항에 기술상의 기준을 위반하여 화약류를 세척한 자

3. 4. (현행과 같음)

제74조(과태료) ① -----

-----.

1. -----
-----제20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

2. (현행과 같음)

3.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2항 또는-----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